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22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엄태영 · 권영진 · 박충권
이만희 · 안철수 · 윤한홍
서천호 · 이종배 · 김용태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